

신정아·변양균 수사 급물살

신씨 횡령 확인, 변씨 외압 시인

후원금 횡령액수 집계되는대로 영장 재청구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압초에 부딪혔던 검찰 수사가 신씨의 횡령 혐의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외압 정황 포착으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변 전 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신씨가 기업체의 미술관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대부분 확인했으며 변 전 실장의 국고지원 외압 혐의에 대해서도 본인의 시인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학력위조 이외에 뚜렷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던 검찰로서는 신씨 횡령과 변 전 실장 지령 외압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만큼 수사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신씨의 후원금 횡령은 18일 청구된 구속영장에서는 혐의 사실로 적시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서 액수가 집계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알려진 학력위조 행위만 해도 신씨가 각 학교와 기관에 제출한 졸업증명서의 날짜가 각각 다르다는 점 등에서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 신씨의 범죄 혐의를 더욱 무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회주로 있는 흥덕사(울산 울주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변 전 실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관계 부처 공무원들의 증언에 이어 변 전 실장 본인의 시인까지 나오면서 실제적 진실로 인정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외압 행사가 단순한 절차상의 위법 행위인지 뇌물 등 모종의 대가에 따른 거래 행위인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실제 흥덕사에 대한 이번 특별교부세 집행은 상식적인 절차와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지자체인 울주군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국고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행자부가 “흥덕사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라”며 위에서부터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것.

문화재보호법상 개인 사찰인 흥덕사에 대한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자 인근 교량 확장 공사에 필요하다는 명분을 끌어들이어 결국 10억원의 교부금이 지급된 점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검찰은 영배 스님이 신씨를 교수로 채용한 동국대 이사장이라는 점에서 변 전 실장이 영배 스님의 청탁을 받아들여 행정자치부를 통해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어떤 대가가 오고갔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영배 스님이 국고 지원을 목적으로 변 전 실장과 ‘부적절한 관계’인 신씨에게 간접적으로 뇌물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변 전 실장에게 제3자 뇌물 수수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따라서 변 전 실장과 신씨가 모두 구속여건을 갖추게 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신씨의 학력위조 은폐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은 아직도 신씨의 박사학위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한다”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재소환된 신정아씨가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엠블런스를 타고 서울서부지검에 도착,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신정아 건강악화 혹시 피병?

검찰 “동정여론 끌어내기”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정아씨의 건강 상태가 사실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씨가 동정여론을 끌어내기 위해 연출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강상태가 정말 좋지 않은 건지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지친 표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신씨는 4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동구톨릭병원에 입원했으나 20일 검찰에 재소환될 때는 혼자서 걷기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어 주변 사람의 부축을 받았다.

검찰은 전날 “신씨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통화내역 조사에서 대포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추궁하자 ‘그건 내 사생활이다. 답변 못하겠다’는 식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씨가 건강악화로 병원 식사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점심식사로 밥 반 공기 이상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처럼 보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검찰은 신씨가 과도하게 자신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신씨의 재소환을 앞두고 검찰은 ‘신씨가 구급차를 타고 오면 병원으로 돌려보내라’는 지침을 직원들에게 하달하기도 했다.

이는 신씨의 영장이 기각된 뒤 구속 사유가 될만한 구체적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이 신씨가 실제보다 아프다고 과도하게 ‘연기’하는 것으로 판단, 동정여론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전날 “신씨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통화내역 조사에서 대포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추궁하자 ‘그건 내 사생활이다. 답변 못하겠다’는 식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씨가 건강악화로 병원 식사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점심식사로 밥 반 공기 이상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정운재 “가족까지 범죄자 몰아” 눈물

영장실질심사 반박 회견

정운재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두고 있는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중간중간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쏟으며 결백을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오후 1시30분께 부산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수심명의 취재진 앞에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을 읽고 나름의 해명을 준비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던 솜씨를 발휘한 글을 읽어내려 갔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말 자신의 집에서 김상진씨로부터 1천만원을, 올해 2월 김씨 운전기사를 통해 장모가 2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내용도 알 수 없는 통화기록과 김씨의 일방적 진술만 믿고 저와 제 아내, 장모를 모두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비서관은 가족이나 본인이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하다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큰 형 윤준조 대목에 다다라서는 혐의가 정사를 언급하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정 전 비서관은 형 윤준조씨와 형수를 ‘국민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철공소에서 일하다가 어렵게 복학한 뒤 성인이 돼서도 철주물공장을 하는 우리 큰 형’, ‘사장님 사모라지



정운재 전 비서관이 2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앞서 검찰 수사에 반박하는 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만 10년째 마트 카운터에서 1일 2교대로 일하는 형수’라고 표현하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이어 “(통화기록과 김씨 진술이) 제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저를 아는 사람들을 눈물 바다로 만들고 우리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도록 하는 증거냐”면서 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토했다. /연합뉴스

“영장항고제 현재 판단 구할 것”

鄭검찰총장 “영장 기각 불복 수단 없어 검·법 갈등”

정상명 검찰총장이 20일 법원이 검찰 영장을 기각한 경우 불복수단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는 방안과 영장항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조해 관심을 끈다.

정 총장은 이날 신정아씨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에 관한 강제처분 문제를 결정하는 영장재판은 무

척 중요해도 판사의 영장 기각시 검찰은 불복할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문제”라며 현재의 심판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영장항고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현행법 해석으로도 불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론스타 사건 때 영장 기각에 대

해 준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관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재청구 하면 된다고 하지만 재청구는 불복 절차가 아니라 다시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이고,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이 아닌 그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 조치이다. /연합뉴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항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영장재판은 판사가 한 명령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으며, 영장이 기각된 경우 재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 총장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헌법소원 심판 등 헌법소송을 내는 방법으로 대법원이 판단근거로 삼는 현행법의 위헌성을 문제삼거나, 아예 형사소송법에 영장항고제를 명문화해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년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 기호로도 년청 발생합니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dogstar.co.kr
1588-8499 | 080-222-0100